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8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관련 제2차 납부의무 규정 ...	2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31.
- (3) 회 부 일 : 2025.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관련 제2차 납부의무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징수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u>보험료, 연체금</u>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u>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u>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 ----- <u>보험료, 제57조에 따른 징수금, 연체금</u> ----- ----- <u>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제57조에 따른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경우 부당이득이</u>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u>보험료</u>,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발생한 날을 말한다</u>)----- ----- -----. ----- ----- ----- ----- ----- ----- -----. ② ----- ----- -----<u>보험료</u>, 제57조에 <u>따른 징수금</u>----- ----- ----- ----- ----- -----. ----- -----.
---	--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7조¹⁾에서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²⁾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³⁾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⁴⁾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또한, 현행법에서는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경우, 거
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등에 대한 연
대납부 의무(제57조제2항 및 제3항)⁵⁾,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7조의2)⁶⁾,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제81조의
2)⁷⁾,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04조)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 그러나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업장미운영(무재산), 사업장파산(청산, 해산 등) 등의 사유로 총 481억 2,9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요양기관 부당이득 결손처분 현황 >

(단위: 백만 원)

연도	계	법인설립 허가취소	사업장미운영 (무재산)	사업장파산 (청산)	사업장파산 (해산)	사업장파산 (해산간주)
계	48,129	5,500	28,934	470	13,223	3
2020	1,577	191	1,386	-	-	-
2021	5,560	-	5,288	272	-	-
2022	11,346	28	3,560	198	7,560	-
2023	23,854	5,281	13,783	-	4,788	3
2024	5,791	-	4,916	-	87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⁹⁾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자

9)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에 대해서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판매업소 중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법」 10)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며¹¹⁾¹²⁾,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0)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 참고로, 현행 「약사법」 제20조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 법인의 약국개설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84판결(2002. 9. 19 선고)에서 해당 조항이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준요양기관(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대여업소), 보조기기 판매업소 중 일부는 「상법」상 법인(회사)에 해당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77조의2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사용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7조의2제1항),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7조의2제2항).

- 이는 법인이 사용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채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것이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2) 「약사법」에 따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요양기관 중 법인에 해당하나 개정안의 취지상 제외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요양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요양기관 중 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단법인(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¹³⁾, 재단법인은 주주(사원)로 구성된 회사와 달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지분 및 주주(사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¹⁴⁾

다만, 개정안의 적용대상기관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판매업자 중 일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존재할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일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에서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분의 개념이 없어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인수·합병 방식의 양도·양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해석례(기준-2023-법무기본-0016)에서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사원 등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요양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없으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이 곤란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모니터링 및 체납처분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 폐업 전 부당이득금이 적기 적발·환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법인 관련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다만, 법인인 요양기관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연자에 대한 제2차 납부지정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법인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출연자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